

## 제 31 차 정기 총회 결과 보고서

일시: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장소: Hotel Alpexpo Grenoble

참석: 참석자 명단은 **첨부 1**과 같음

### 주요 결과

2007년 11월 2일 실시된 제 31차 정기 총회는 오전 환영 인사 및 기조 강연에 이어 오후 총회 안건 보고 및 논의 형태로 실시 되었다. 오전, 환영인사는 한우석 재불과협 회장, 이경희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과학관, 유승덕 재독과협 회장, 김진일 재영과협 회장 그리고 한만옥 재오스트리아과협 회장 순으로 실시 되었음. 이어, 기조 강연으로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 로드맵 (박성국 사무관, ITER Organization),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와 주변 산업 기간 시설 확보 (장두봉, 재독과협, AR & T 대표이사) 그리고 Relation UTBM et Corée: évolution et perspective (배정숙 교수, Univ. Tech. in Belfort-Montbéliard)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 1. 개회

한우석 회장의 총회 개회에 이어 한우석 회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 2. 총회 식순 및 안건 채택

**[ASCoF/GEN(2007)14]**

지난 10월 1일 공고된 총회 식순 및 안건에 의해 10월 25일까지 추가 안건을 접수 받아 최종 식순 및 안건을 채택하였다. 한우석 회장은 안건에 대한 총회 참석 인원에게 안건 동의를 요청하였고 이의 없이 채택되었다. 총회일 진행된 식순 및 안건은 **첨부 2**와 같다.

#### 3. 총무 보고

최용준 총무이사는 협회 결성의 목적,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그리고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직 변경 사항으로 2007년에 스위스 불어권역의 재불과협 통합이 있었다. 인원 현황은 11월 2일 현재 총 246명의 등록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0%의 회원이 파리지역회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내용으로 마르세이유 지역 대표로 김창석 회원이 추대되었다. 2007년 재불과협 임원진현황은 **첨부 3**과 같다.

#### 4. 2007년 주요 활동 보고

한우석 회장은 2007년 재불과협 주요 활동을 보고 하였다. 금년에는 특히 각 지역별 모임과 함께, YGF 관련 행사 (YGF 유럽 워크샵, 재불과협 YGF 단합대회가)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첨부 4와 같다.

#### 5. 개정 시행 세칙 공고

최용준 총무이사는 지난 4월 28일 시행된 2007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추가 시행 세칙 (제 5장 재무, 제 6장 문서, 제 7장 회의, 제 8장 인수 인계 그리고 제 9장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공고를 하였다. 재불과협의 현 회칙 및 시행 세칙은 첨부 5와 같다.

#### 6. 사업 보고

##### a. YGF사업

최유진 YGF 이사는 2007년 6월 2-3일 영국에서 실시된 YGF 유럽 워크샵과 7월 한국에서 열린 YGF2008 대회 그리고 10월 6일 시행된 재불과협 YGF 단합대회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8년 YGF 대회를 대비하여 회원 및 주변의 재불 한인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총회는 YGF 참여 대상자 (현재 프랑스 국적 소지자, 10년이상 체류증 소지자, 1.5세대 이상 교포)이외에도 청소년기에 유학을 온 조기유학생도 그 대상자에 포함할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b. 웹페이지 개선 사업

최용준 총무이사는 이흥노 웹담당이사를 대신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불과협 웹사이트 개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웹사이트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본 총회 후반에서 논의될 개인 정보 공개 항목 결정에 따라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스크립트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총회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회원간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웹사이트의 운영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개편 완료를 위해 필요하면 수탁사업 형태의 발주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의 완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c. 홍보사업

권현아 홍보이사는 2007년 재불과협 홍보 사업으로 집행부 구성 공고, YGF대상자 모집 공고, 총회 공고 그리고 한인 전화번호부 등재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2008년 홍보 예정 사업으로 실천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였다.

##### d. 수탁과제 보고

##### i. 과충 DB 구축 사업

최용준 총무이사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시행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맹 (이하

과총)의 재외 과학협 통합 솔루션 사업 (이하 DB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하였다. 2007년 사업은 총 2000유로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2006년 구축된 기존 DB내용에 신규 회원 및 누락 부분의 보완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2007년 11월 1일 현재 총 24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본 사업은 2008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총회는 과총의 수탁과제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므로, 추후에는 회원에게의 통보를 통한 동의를 획득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ii. 과총 해외 과학기술 동향 보고 사업

김동하 회원 (그르노블)은 과총의 수탁과제인 프랑스 최근 과학 기술 정책과 동향 파악에 관한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총 2058유로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본 사업은 프랑스 내의 최근 과학기술영역에서 시사성이 있는 분야 및 특성화된 연구방향과 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하여 향후 한국과 유럽내의 프랑스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분야로는 과학기술 정책, 전자/통신, 원자력/물리, 재료/신소재, 생명과학, 에너지 그리고 프랑스 고등교육 정책이다. 2007년 11월 현재 각 분야별 조사 내용에 관한 취합이 진행중이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iii. 정통부 유럽 지능형로봇연구 및 개발현황조사 사업

한우석 회장은 한국 정보통신부 발주 과제 (사업비 총 5천만원) 의 수행 배경 및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다. 재영, 재독, 재불 그리고 재오 과협의 총 4인이 참여하는 본 과제는 한우석 회장이 과제 책임을 맡고 있으며, 2008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유럽 선진국 6개국에서 서비스형 지능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우수 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선정하여 기관의 주요 연구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책임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미래에 대한 시각, 산학 협력관계 및 그 특성을 파악하여 6개 조사대상국의 지능형 로봇을 제작하는 우수 산업체 선정을 통해 산업체의 연구, 개발 및 제작 상황을 심층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다.

## iv. 한전 유럽 원전 주변 방사선 환경 평가 자문 사업

상기 안건은 사업 책임자인 김종반 회원의 총회 불참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총회는 상기 보고된 사업에 대해, 관련 시행 세칙의 제정과 전문 회계사의 고용을 통해 과제비 활용 및 출납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7. 2008년 주요 예정 사업 보고

한우석 회장은 2008년 재불과협 주요 예정 사업에 관한 보고를 실시하였다.

### a. 춘계학술대회

2008년부터 분리 시행하기로 결정한 학술대회는 2008년 춘계 학술대회의 제목으로 2008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엑상프로방스 (마르세이유 지역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본 학술대회에 김창석 마르세이유 지역대표가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학술대회의 특

별 세션으로 “신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 계획 및 내용은 추후 보고될 예정이다.

#### b. 장학 사업

2008년 재불과협이 새롭게 추진할 장학사업으로, 세부 안건은 집행부에서의 추후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c. 제3회 재유럽 한국 과학기술자 학술대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6년 제 2회 대회 (파리)에 이어 제 3회 재유럽 한국 과학기술자 학술대회가 오는 2008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독일 과협의 후원으로 하이델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개 과협 연사 동수 원칙”을 기본으로 준비될 본 행사에는 특별 세션으로 “지능형 로봇 공학”, “유럽 YGF 워크샵” 그리고 “유럽 여성과학 심포지엄”이 마련될 예정이다.

#### d. YGF 단합대회

2008년 재불 YGF 워크샵은 2008년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Poitier에서 YGF 대상 회원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치뤄질 예정이다. 본 단합대회를 통해 YGF 네트워크의 강화와 재불과협내에서의 위치 확보 그리고 재불과협의 미래 선두 그룹 형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 8. 재무 보고

박원광 재무이사는 2008년 승인 예산 및 현 지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 9. 감사 보고

김명수 감사의 필석으로 한우석 회장이 그 내용을 대독하였다. 감사보고서는 **첨부6**과 같다.

### 10. 감사 선출

2008년도 감사는 마르세이유 지역회의 전창훈 회원이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 11. 안건 논의

#### a. 분과 개정 방안 의견 수렴

한우석 회장은 현 6개 분과 (기초과학, 전기전자, 기계항공, 환경, 생명, 건축) 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성을 재고하기 위해 기초과학, 전기/전자, 기계/항공, 환경/에너지, 생명/의학, 건축/토목분과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총회는 그 타당성을 인준하였고, 회장은 분과 개정을 결정하였다.

#### b. 개인 정보 양식 및 공개 항목 논의

한우석 회장은 회원 개인 정보 양식을 성명 (한글, 영문),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E-mail

주소, 소속기관명 및 주소, 지위,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 자택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요 전공, 세부 전공 (3가지), 최종학위 및 학교명, 전문분과로 제시하였고, 이 중 생년월일, 출생지, 자택주소, 자택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세부 전공 (3가지) 항목은 외부 비공개로 제안하였다.

이에 총회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공개 가능한 항목의 회원간 공유는 허락되며 공개 및 비공개 항목의 외부 배포시에는 각 회원에게 사전 통보해 줄 것을 결정하였다.

## 12. 기타 질의, 응답

없음.

## 13. 폐회

한우석 회장은 제 31차 재불과학협 정기총회를 폐회하였음.

## 첨부 1

### 총회 참석자 명단 (총 61명)

#### 그르노블 지역회 (17 명)

강준규, 고희은, 구민, 김규석, 김동하, 김예원, 김현선, 서다원, 신원식, 양화인, 윤국진, 임자경, 장형준, 전희진, 정성영, 정호석, 조의정

#### 리옹 지역회 (12 명)

김경범, 김의중, 문희숙, 송범찬, 신중석, 심광보, 윤강우, 이태화, 이호, 조재원, 피재환, 한우석

#### 마르세이유 지역회 (7 명)

김창석, 박성국, 장근백, 전창훈, 정광희, 정완일, 홍석호

#### 스위스 지역회 (2 명)

신종호, 이승태

#### 파리 지역회 (23 명)

김동직, 김상우, 김세종, 김완희, 김지은, 김한철, 박용향, 박원광, 서진원, 송헌, 유현재, 이경희, 이승호, 이정근, 이태준, 임용택, 전호균, 정수현, 정진미, 조근상, 진종우, 최용준, 최유진

첨부 2

ASCoF/GEN(2007)14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협회 제 31차 정기 총회

일시 :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14시~17시)

장소 : Hotel Alpexpo Grenoble, 1 Avenue d'Innsbruck, 38100, Grenoble, France (+33 4 7633 0202)

참석 : 전체 회원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협회 제 31 차 정기 총회 식순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당일은 추가 안전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총회식순

1. 개회 (한우석 회장)
2. 총회 식순 및 안전 채택 [ASCoF/GEN(2007)14]
3. 총무 보고 (최용준 총무이사)
4. 2007년 주요 활동 보고 (한우석 회장)
5. 개정 시행 세칙 공고 (최용준 총무이사)
6. 사업 보고
  - a. YGF사업 (최유진 YGF이사)
  - b. 웹페이지 개선 사업 (이홍노 웹담당이사)
  - c. 홍보사업 (권현아 홍보이사)
  - d. 수탁과제 보고
    - i. 과총 DB 구축 사업 (최용준 총무이사)
    - ii. 과총 해외 과학기술 동향 보고 사업 (김동하 회원)
    - iii. 정통부 유럽 지능형로봇연구 및 개발현황조사 사업 (한우석 회장)
    - iv. 한전 유럽 원전 주변 방사선 환경 평가 자문 사업 (김중빈 회원)
7. 2008년 주요 예정 사업 보고 (한우석 회장)
  - a. 춘계학술대회
  - b. 장학 사업
  - c. 제3회 재유럽 한국 과학기술자 학술대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 d. YGF 단합대회
8. 재무 보고 (박원광 재무이사)

9. 감사 보고 (김명수 감사)
10. 감사 선출
11. 안건 논의 (한우석 회장)
  - a. 분과 개정 방안 의견 수렴
  - b. 개인 정보 양식 및 공개 항목 논의
12. 기타 질의, 응답
13. 폐회

### 첨부 3

## 2007년 재불과학협 임원진 현황

#### 집행부

회장: 한우석 (ENSMSE)  
 부회장: 최유진 (CNRS/IPGP)  
 부회장: 김세중 (Saint Gobain S.A.)  
 총무이사: 최용준 (OECD/NEA)  
 재무이사: 박원광 (Supelec LSS)  
 여성담당이사: 강명아 (Univ. Blaise Pascal)  
 웹담당이사: 이흥노 (MPH Groupe)  
 홍보이사: 권현아 (Samsung)  
 YGF이사: 정진미 (Nestle)  
 청년부이사: 김종욱 (ECP)

감사 김명수 (ATI-INCINERATEURS)

#### 지역대표

파리: 유현재, 최성우 (ENSMP)  
 그르노블: 구민 (CNRS/IN2P)  
 툴루즈: 김영섭 (IAS)  
 리옹: 김의중 (INSA Lyon)  
 릴,노르망디: 박정해 (Univ. du Havre)  
 브루따뉴: 박정열 (France Telecom)  
 마르세이유: 김창석 (ITER)  
 스위스: 신종호 (EPSL)  
 벨기에: 장지원

#### 전문분과위원장

기초과학: 정광희 (CNRS)  
 전기전자: 이해영 (I&H Tech.)  
 기계항공: 박정해 (Univ. du Havre)  
 환경: 김명수 (ATI-INCINERATEURS)  
 생명: 박규호 (Univ. Paris XI)  
 건축: 이승호 (DLPG)

## 첨부 4

### 2007년 주요 활동 목록

2월 3일	1차 집행부 회의, 파리
2월 14일	마르세이유 1차 지역 모임
2월 20일	주불 한국대사관 조일환 대사 면담, 파리 (한우석 회장)
2월 23-24일	그르노블 설날 행사, 그르노블(한우석 회장 참석)
3월 1-3일	유럽과협회장 협력회의, 오스트리아, 비엔나(한우석 회장)
3월 10일	2차 집행부 회의, 파리
3월 15일	현대/기아 자동차 채용설명회, 파리
3월 25일	강원도 전략사업기획단 방문 및 단장 면담, 서울(한우석 회장)
3월 28일	과총 방문 (과총 회장, 담당자 면담), 서울(한우석 회장)
3월 30일	충북 테크노파크 단장 면담, 천안(한우석 회장)
4월 14-15일	그르노블 1차 지역모임, 그르노블(한우석 회장 참석)
4월 14일	LG전자 채용설명회, 파리
4월 19일	리옹 1차 지역모임, 리옹(한우석 회장 참석)
4월 20일	강원 전략사업기획단 그르노블 CNRS 방문 협조, 그르노블(한우석 회장 참석)
4월 21일	파리 1차 지역모임 및 세미나 (한우석 회장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의 현황과 전망, 이권희 동아대학교 교수</li> </ul>
4월 28일	2007년 운영위원회, 파리
5월 12일	파리 지역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불과협 YGF 현황 보고, A. Berton-Besnier 회원</li> </ul>
5월 17일	파리 주재 기관장 간담회, 파리 (한우석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OECD 대표부, 국방과학연구원, (주)한국수력원자력</li> </ul>
5월 26일	그르노블 2차 지역모임
6월 2-3일	YGF 유럽 워크샵, 영국(한우석 회장, 최유진 부회장, 최용준 총무이사 참석)
6월 2-3일	Mckinsey사 채용 설명회, 상티이
6월 8-9일	마르세이유 2차 지역모임 및 기관장 간담회, 엑상프로방스(한우석 회장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ER 주재원 참석</li> </ul>
6월 9일	파리 지역 모임
6월 16일	3차 집행부 회의, 파리
6월 23일	2007년 재오스트리아 과협 학술대회, 비엔나 (김민지 회원)
6월 30일	스위스 지역회 발족식, 로잔(한우석 회장, 최용준 총무이사 참석)
6월 30일	파리 지역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YGF 대회 참석자 보고, 김민지 회원</li> </ul>
7월 9-10일	과총 세계한민족과학기술 연례행사 기조연설, 서울(한우석 회장)
7월 9-14일	2008 YGF 대회 (5명 참가, 서울)

- 7월 23일      충북 테크노파크 방문 및 강연, 청주(한우석 회장)
- 7월 25일      과총 방문 (사무총장 및 담당자 면담), 서울(한우석 회장)
- 8월 2일      과총 방문 (과총 회장 면담), 서울(한우석 회장)
- 8월 17-19 일   유럽과협회장 협력회의, 리용(한우석 회장)
- 8월 25일      4차 집행부 회의, 파리
- 9월 15일      프랑스 중부지역모임, 그르노블(한우석 회장 참석)
- 9월 21일      OECD 강연, 파리(한우석 회장)
- 10월 6일      재불과협 YGF 단합대회, Vaux le Vicomte (한우석 회장 참석)
- 10월 7일      5차 집행부 회의, 파리
- 10월 13일     파리 지역 회원 간담회
  -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 10월 19-21일   재독과협 정기총회 참관, 독일 에센  
(한우석 회장, 최유진 부회장 참석, 김세종 부회장 발표)

## 첨부 5

# 회칙 및 개정 시행 세칙

## 회 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제 1 항 본 협회는 프랑스 협회법 (Loi du 1ère juillet 1901) 에 의거하여 등록된 단체이다.

제 2 항 본 협회의 명칭은 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 (在佛韓國科學技術者協會,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éens en France, 약칭 재불과협, 在佛科協, ASCoF), 이하 협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제 1 항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교류를 증대한다.

제 2 항 한국 과학기술계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 3 항 한불 양국간의 과학기술 교류에 기여한다.

#### 제 3 조 소재지

제 1 항 본 협회의 협회법상 등록소재지는 파리(Paris)에 둔다.

#### 제 4 조 사업연도

제 1 항 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구분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입회절차를 통해 가입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1 항 정회원 -일반회원

(가) 학사 (전문대포함)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로, 프랑스와 붙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자.

(나) 프랑스와 불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 과학기술 분야 기능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제 2 항 정회원 - 학생회원

프랑스와 불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 대학 (전문대포함)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

제 3 항 명예회원

과학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협회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자.

제 4 항 특별회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기업 또는 기관.

**제 6 조 입회 및 탈퇴**

제 1 항 입회는 입회원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성립한다.

제 2 항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명으로 제출하거나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립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제 1 항 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2 항 정회원은 본 협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항 회원은 본 협회의 회칙 및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항 회원은 본 회칙 17 조에 명시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징계 및 제명**

제 1 항 본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심의한 후, 회장의 동의를 거쳐 징계 및 제명을 결정하고, 회장은 결정 결과를 해당 회원과 본 협회 감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 2 항 징계 및 제명에 대한 결정은 총회시 감사가 감사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기구**

제 1 항 본 협회는 ㉠집행부 ㉡지역회 ㉢전문분과 ㉣감사 ㉤특별위원회의 기구를 둔다.

## 제 10 조 집행부

제 1 항 집행부는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 항 구성

집행부는 회장, 1 인 또는 2 인의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편집이사, 전산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들은 필요에 따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제 3 항 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 프랑스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직업을 갖고 종사하며, 후보 등록 당시로부터 4 년 이상 연속 활동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제 4 항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5 항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가) 당해년도 부회장이 회장 후보가 된다. 당해년도의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른 부회장과 같이 회장 후보가 된다.
- (나)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단, 회장 후보가 일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인준한다.
- (다) 당해년도 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라) 부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제 6 항 회장 및 부회장 임기

- (가)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나) 부회장의 임기는 2 년이다.

제 7 항 회장 및 부회장 임무

- (가)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 (나) 회장은 집행부 운영을 통해 총회 의결 사항, 협회의 모든 사업 및 대내외 활동을 총괄 책임하여 집행하며, 그 집행 내역을 회원에게 수시로 알린다.
- (다) 회장은 지역회 및 전문분과의 구성을 결정한다.
- (라) 부회장은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차기 회장 선거에서 회장에 입후보한다.
- (마)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 8 항 이사 의 임기 및 임무

- (가) 이사들은 회장이 임명,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 (나) 이사들의 임무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11 조 지역회

- 제 1 항 지역회의 구성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제 2 항 지역회는 본 회칙 2 조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
- 제 3 항 지역회 대표는 각 지역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 항 기타 지역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 제 12 조 전문분과

- 제 1 항 전문분과의 구성은 공통성이 있는 분야를 규합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제 2 항 전문분과는 본 회칙 2 조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
- 제 3 항 전문분과장은 각 전문분과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 항 기타전문분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 제 13 조 감사

- 제 1 항 본 협회는 1 명의 감사를 둔다.
- 제 2 항 감사는 총회에서 최다수 득표로 선출되며, 감사 후보는 본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2 년 이상 활동한 자이다.
- 제 3 항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 제 4 항 감사는 해당 사업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 회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 5 항 감사는 필요시 회장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14 조 특별위원회

- 제 1 항 본 협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2 항 기타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시 결정한다.

## 제 4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 제 15 조 총회

- 제 1 항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제 2 항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장의 명의로, 개최 30 일전 공고를 통해 소집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회칙의 수정 및 변경
  -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 (다) 특별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인준

- (라) 차기 사업연도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인준
  - (마) 총회년도 사업결산 및 예산결산
- 제 3 항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명 이상의 서명 받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을때, 회장의 명의로 소집되며, 소집공고에 명시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 제 16 조 운영위원회

- 제 1 항 운영위원회는 상임, 심의, 의결 기관이다.
- 제 2 항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지역회대표, 전문분과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 3 항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1 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제 4 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가) 협회운영,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결.
  - (나) 시행세칙의 제정 및 수정.
  - (다) 회원관리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천.
  - (라) 연회비 결정.
  - (마) 차기 회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차기 회장 당선자가 없을 시, 차기 회장 후보자를 추천.

## 제 5 장 재 정

### 제 17 조 재정

- 제 1 항 본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항 정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찬조금으로 대신한다.
- 제 3 항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 제 6 장 회칙 개정, 시행세칙 결정 및 협회의 해체

### 제 18 조 회칙 개정 및 시행세칙 결정

- 제 1 항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  
특별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을 논의, 확정하고, 총회 개최 30 일전에 모든 정회원에게 공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제 2 항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회장은 제정 또는 수정된

시행세칙을 30 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 제 19 조 협회의 해산

제 1 항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어야 하며, 참가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 항 해산시 본 협회의 자산은 프랑스협회법 9 항 (Article 9 de la loi 1901) 에의거,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 1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적인 일반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1976 년 제정, 1978 년 6 월 개정, 1980 년 10 월 개정, 1984 년 4 월 개정, 1987 년 3 월 개정, 1991 년 11 월 개정, 2003 년 10 월 개정”

## 시행세칙

### 제 1 장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

#### 제 1 조 회장 후보 등록 절차

제 1 항 차기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현 회장 및 부회장은 해당 총회 20 일 이전에 개인 이력서와 출마 소견서를 현 회장에게 보냄으로써 후보 등록을 한다.

제 2 항 현 회장은 총회 15 일 이전에 차기 회장 후보자들의 입후보 내용을 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 조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

제 1 항 차기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회원은 해당 총회 20 일 이전에 개인 이력서와 출마 소견서를 현 회장에게 보냄으로써 후보 등록을 한다.

제 2 항 현 회장은 총회 15 일 이전에 차기 부회장 후보자들의 입후보 내용을 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 장 지역회

#### 제 3 조 목적 및 활동

재불과협 회칙 제2조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역회 단위로 수행하며 (회칙 제11조 2항), 지역회원들의 관리 및 신회원 영입활동을 한다.

#### 제 4 조 구 성

지역회의 구성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회칙 제11조 1항).

#### 제 5 조 지역대표 추천 및 임기

제 1 항 각 지역회는 1인 이상의 지역대표를 둔다.

제 2 항 지역대표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제 3 항 지역대표 임기 만료시나 유고시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회는 새 지역대표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회칙 제11조 3항).

#### 제 6 조 운영 경비

지역회 운영 경비의 일부분을 재불과협이 보조하며, 매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3 장 전문분과

#### 제 7 조 목 적

재불과협 회칙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전문분과를 둔다.

#### 제 8 조 활 동 (회칙 제12조 2항)

제 1 항 전공분야가 같은 회원간의 상호연결 및 전문적 과학기술교류를 협조한다.

제 2 항 모국의 과학기술 단체 및 산업계와 전문분과 회원간의 과학기술 교류를 협조한다.

#### 제 9 조 구 성 (회칙 제12조 1항)

제 1 항 전문분과의 해당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제 2 항 전문분과의 신설, 변경 및 해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제 10 조 전문분과장 추천 및 임기

제 1 항 각 전문분과는 전문분과장 1명을 둔다.

제 2 항 전문분과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제 3 항 전문분과장 임기 만료시나 유고시에는, 차기 총회에서 해당 전문분과는 새 전문분과장을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회칙 제12조 3항).

### 제 4 장 수탁 사업

#### 제 11 조 사 업

재불과협 명의 수탁사업의 수행 여부는 집행부 및 해당분야 전문분과장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 12 조 사 업 비

제 1 항 수탁 사업비의 일부를 과협의 간접비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 항 간접비의 비율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5 장 재 무

#### 제 13 조 목 적

제 1 항 본 규정은 재불과협 회칙 제 5 장 재정에 규정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재무 업무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 행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 본 규정은 재불과협 회칙 제 10 조 7항 및 8항에 명시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무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 제 14 조 개요

제 1 항 재무와 관련한 모든 업무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최상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 2 항 재무이사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재무 기록, 관련 서류, 집행 내역서, 영수증 또는 유사 증명서 등을 항상 보관 유지하여, 집행부 또는 감사의 요청시 신속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항 재무 기록은 재불과협 회칙 제 13 조 4항에 의거, 연 2 회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항 재무 기록은 필요시 회원 또는 일반에게 전체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다.

#### 제 15 조 기금의 운용

제 1 항 본 협회의 모든 기금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재불과협 은행구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제 2 항 재불과협의 기금 운용은 사업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 3 항 재불과협의 모든 경비는 재무이사가 결재한 수표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항 경비의 지출을 위한 결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단일 집행 금액 2000 유로 이상의 경우, 신청인은 집행일 기준 만 20 일 이전까지 재무이사에게 ‘예산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이사는 집행일 기준 만 15 일 이전까지 회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며, 회장은 집행일 기준 만 7 일 이전까지 감사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접수해서 그 기록을 유지 해야 한다.

(나). 단일 지출 금액이 500 유로 이상 2000 유로 미만의 경우, 신청인은 집행일 기준 만 14 일 이전까지 재무이사에게 ‘예산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이사는 집행일 기준 만 7 일 이전까지 회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단일 지출 금액이 500 유로 미만의 경우, 신청인은 집행일 기준 만 3 일 이전까지 회장 또는 재무이사에게 구두,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제 5 항 경비 집행 절차

(가) 시행세칙 제 15 조 4 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경비는 재무이사가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무이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집행인이 선집행 후 환불 신청할 수 있다.

(나) 단일 지출 금액이 500 유로 이상인 경우는 회장 승인 후 재무이사는 집행인에게 총 신청금액의 최대 70%를 선지불하고 집행 후 정산할 수 있다.

(다) 모든 승인된 경비는 ‘예산 집행 내역서’에 ‘영수증’ 또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 후 만 30일 이내에 재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항 재무이사는 재불과협 회칙 제 15 조 2항 (마)에 의거하여 총회시 보고된 예산 결산 내역을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보고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 계획, 총회에 보고된 예산 내역, ‘예산 집행 신청서’, ‘예산 집행 내역서’, ‘영수증’ 등과 같은 관련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나) 회장은 본 보고서 결재 후 운영위원회 및 감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내역의 요약을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재무 감사

제 1 항 감사는 재불과협 회칙 제 13 조에 의거 연 2 회 재무 감사를 실시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항 감사는 시행세칙 제 15 조 4항 (가) 항목 발생시 회장에게 그 의견을 집행일 기준 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장 문서

### 제 17 조 목적

제 1 항 본 규정은 협회 행정 진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문서에 대한 보존 규정을 통해 재불과협 연혁의 내실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 본 규정은 재불과협 회칙 제 10 조 7항 및 8항에 명시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무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 제 18 조 개요

제 1 항 모든 문서의 관리 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최상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 2 항 문서라함은, 회원 가입 서류, 회원 현황, 재산 현황, 영수증, 내역서, 집행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회의안건, 회의록 등 재불과협의 모든 문서를 칭한다.

제 3 항 문서는 필요시 회원 또는 일반에게 전체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다.

### 제 19 조 문서의 보관

제 1 항 재불과협의 모든 문서는 인쇄본 및 전자 서류 (CD 등)의 형태로 영구 보관한다. 단, 영수증의 경우 4년 보관 후 폐기하며, 그 목록 및 근거 서류만 영구 보관한다.

제 2 항 영수증의 폐기 시점은 회계년도에 준한다.

### 제 20 조 문서의 결재

제 1 항 모든 문서에는 담당자의 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결재의 시기는 본 시행 세칙에 명시된 경우 그 시기를 준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통례를 따른다.

- 제 3 항 결재자가 궤석인 경우 전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 임원은 7일 이상 궤석시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 4 항 궤석 통보 미접수시, 결재 신청후 만 15일 이상 조치가 없는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 전자 우편 등과 같은 결재 신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 5 항 결재를 획득한 문서는 총무이사에 의해 적절한 문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 7 장 회의

### 제 21 조 목적

- 제 1 항 본 규정은 회칙 제10조 및 제 4 장에 관한 시행 세칙으로, 집행부 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한 기준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 2 항 본 규정은 재불과협 회칙 제 10 조 8항 (나) 에 명시된 이사의 임무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 제 22조 개요

- 제 1 항 모든 회의의 조직 및 개최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최상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 제 2 항 회의라 함은 집행부 회의, 운영위원회, 전문분과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임시 총회, 정기총회를 칭한다.
- 제 3 항 회의와 관련된 문서는 필요시 회원 또는 일반에게 전체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다.

### 제 23 조 회의 준비 및 진행

- 제 1 항 회장은 회의 개최 만 7 일 이전까지 참석대상자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단, 총회는 회칙 제15 조 2 항에 의거 30일전 공고를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통보는 만 15일 이전까지 한다.
- 제 2 항 회의는 회장 또는 회장대행이 진행하며, 회의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한다. 단 전문분과회의는 전문분과장이 주재하며,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주재한다.
- 제 3항 회장은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 확정된 회의록을 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장 인수인계

### 제 24 조 목적

- 제 1 항 본 규정은 명확한 인수인계를 통해 협회의 자산을 유지하고 재불과협 연혁의 내실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항 본 규정은 재불과협 회칙 제 10 조 8항 (나) 에 명시된 이사의 임무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 제 25 조 개요

- 제 1 항 인수인계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단, 회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전임 및 후임 회장 모두 그 책임을 공유한다.
- 제 2 항 인수인계라 함은 모든 집행부 임원의 교체시 그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업무 및 문서, 재산, 자료에 관한 전달을 청한다.

## 제 26 조 절차

인수인계시에는 인수인계 목록을 확인 후 해당 목록이 작성된 서류를 인수, 인계자 및 참관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 각각 사본을 보관한다. 원본은 후임 총무 이사가 보관한다.

## 제 9 장 개인 정보 보호

### 제 27 조 목적

- 제 1 항 본 규정은 회칙제 5 조에 정의된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프랑스 개인 정보 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의 권고 사안을 준수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항 본 규정은 재불과협 회칙 제 10 조 8항 (나) 에 명시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무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 제 28 조 개요

- 제 1 항 회원 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최상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 제 2 항 개인 정보라 함은 회원 가입시 제출하는 가입동의서, 협회 웹사이트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취득한 회원 개인의 모든 정보를 칭한다.

### 제 29 조 수집 및 유지

- 제 1 항 회원 개인 정보는 협회 운영 및 현황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그 내용은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요구할 수 없다.
- 제 2 항 회원은 협회가 정당한 절차로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정보의 제공으로 회원 개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3 항 수집된 회원 개인 정보는 회장의 책임하에 유지되며, 이를 위해 허가된 최소한의 인원만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회원은 정확한 정보의 유지를 위해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의 변경 내용을 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제 30 조 목적외 사용 및 제 3자와의 공유

- 제 1 항 회원 개인 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으며, 상업 및 정치적 목적 또는 사생활 침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제 2 항 단, 회원 개인 정보는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협회의 이익을 위해 일부 또는 전부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공개 목적 및 범위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회원 개개인에게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제 31조 웹페이지내의 개인 정보 보호

- 제 1 항 협회 웹페이지내에 저장된 회원 개인 정보는 검증된 보안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를 통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항 비밀번호 결정, 수정 및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 개인은 비밀번호의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회원 본인의 실수로 인한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협회가 아닌 회원 개인이 책임을 진다.

#### 부칙 사항

본 시행세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6

### 2007년 감사 보고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부득이한 해외출장으로 아쉽게 2007년 총회에 참석할수가 없어 서면으로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의 큰 행사에 비해 수입과 지출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이루었다 봅니다.

Young Generation Forum (YGF), 장학기금 조성등 의욕적인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으나 협회기금과 회원회비 수입이 한정되어있고 스폰서 수입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계획들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수주 프로젝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는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이 결여되어있어 책임소재를 높이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출명세서와 영수증들을 대조하여 확인한바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총회모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김명수

2007년 10월31일

